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15호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하천환경 변화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COD, TOC 및 TP)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등).

나. 하천수질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환경전문 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kimcs46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을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 중 “대전”을 “시”로, “대전지역사회”를 “지역사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야생 동·식물종”을 “야생생물종”으로 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을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환경기본계획”을 각각 “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지역”을 “지역”으로 한다.

제11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관리아생동·식물”을 “관리아생생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을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의 규정을”을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로 한다.

별표 제2호 중 [비고]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 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3. 하천수질

수계명	구 간	물 등 급		상 태 (캐릭터)	생 활 환 경 기 준							대장균군(군수/100 m ^l)	
					수소이 온농도 (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mg/l)	총유기 탄소량 (TOC,mg/l)	부유물질 (SS,mg/l)	용존산소 (DO,mg/l)	총 인 (T-P,mg/l)	총대장 균군	분원성대 장균군
대전천	전 구 간	좋음	I 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유등천1	대전시 경계 ~ 대전천 합류점전	좋음	I 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유등천2	대전천 합류점후 ~ 갑천 합류점전	좋음	I 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갑천1	두계천 합류점 (시경계~유등천 합류점전)	좋음	I 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갑천2	유등천 합류후 ~ 원촌교(하수처리장 유입전)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이하	25 이하	5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갑천3	원촌교 ~ 금강 합류점전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이하	100 이하	2 이상	0.3 이하	-	-
금 강	대청댐 직하 ~ 갑천 합류점전	매우 좋음	I a		6.5~8.5	1 이하	2 이하	2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주원천	전 구 간	매우 좋음	I a		6.5~8.5	1 이하	2 이하	2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정생천	전 구 간	좋음	I 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유성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진잠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탄동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관평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대동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용호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본이념) 대전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 ----- -----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u>합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u></p>	
<p>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u>대전의 환경은</u>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u>대전지역사회</u>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u>시</u>----- ----- -----<u>지역사회</u>----- -----</p>
<p>제7조(시의 책무) ① (생략) 1. (생략) 2. <u>야생 동·식물종의 보전 등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u> 3. ~ 7. (생략) ② (생략)</p>	<p>제7조(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야생 생물종</u>----- -----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u>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u>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며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제8조(자치구의 책무) ----- ----- <u>시</u>----- ----- -----</p>
<p>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u>시 환경기본계획</u>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u>제1항의 규정</u>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p>	<p>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 ----- <u>환경보전계획</u> ----- ----- ②<u>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u>----- ----- 1.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u>관리야생 동·식물</u>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8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 ② (생략)</p> <p>③ 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p>	<p>----- ----- -----</p> <p>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관리야생생물</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p>
<p>제20조(시민활동의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환경상을 수여하되, 환경상 수여는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별표]</p> <p>1. 대기 (생략)</p>	<p>제20조(시민활동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p> <p>③ (현행과 같음)</p> <p>[별표]</p> <p>1. 대기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소음 (생략)</p> <p>[비고]</p> <p>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p> <p>가. “가”지역</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녹지지역</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전용주거지역</p> <p>(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p> <p>(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p> <p>(6) 「도서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p> <p>나. “나”지역</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생산관리지역</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p> <p>다. “다”지역</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과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p> <p>라. “라”지역</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p> <p>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p> <p>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소음 (현행과 같음)</p> <p>[비고]</p> <p>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 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p>

현 행

3. 하천수질

수계명	구 간	물 등 급		상 태 (캐릭터)	생 활 환 경 기 준						대장균군(균수/100 m ^l)		
					수소이 온농도 (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신설)	(신설)	부유물질 (SS,mg/l)	용존산소 (DO,mg/l)	(신설)	총대장 균군	분원성대 장균군
대전천	전 구 간	좋음	Ib		6.5~8.5	2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500 이하	100 이하
유등천1	대전시 경계 ~ 대전천 합류점전	좋음	Ib		6.5~8.5	2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500 이하	100 이하
유등천2	대전천 합류점후 ~ 갑천 합류점전	좋음	Ib		6.5~8.5	2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500 이하	100 이하
갑천1	두계천 합류점 (시경계 ~ 유등천 합류점전)	좋음	Ib		6.5~8.5	2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500 이하	100 이하
갑천2	유등천 합류후 ~ 원촌교(하수처리장 유입전)	보통	III		6.5~8.5	5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5,000 이하	1,000 이하
갑천3	원촌교 ~ 금강 합류점전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신설)	(신설)	100 이하	2 이상	(신설)	-	-
금 강	대청댐 직하 ~ 갑천 합류점전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7.5 이상	(신설)	50 이하	10 이하
주원천	전 구 간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7.5 이상	(신설)	50 이하	10 이하
정생천	전 구 간	좋음	Ib		6.5~8.5	2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500 이하	100 이하
유성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1,000 이하	200 이하
진잠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1,000 이하	200 이하
탄동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1,000 이하	200 이하
관평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1,000 이하	200 이하
대동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1,000 이하	200 이하
용호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신설)	(신설)	25 이하	5 이상	(신설)	1,000 이하	200 이하

개 정 안

3. 하천수질

수계명	구 간	물 등 급		상 태 (캐릭터)	생 활 환 경 기 준							대장균군(균수/100 m ^l)	
					수소이 온농도 (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mg/l)	총유기 탄소량 (TOC,mg/l)	부유물질 (SS,mg/l)	용존산소 (DO,mg/l)	총 인 (T-P,mg/l)	총대장 균군	분원성대 장균군
대전천	전 구 간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유등천1	대전시 경계 ~ 대전천 합류점전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유등천2	대전천 합류점후 ~ 갑천 합류점전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갑천1	두계천 합류점 (시경계 ~ 유등천 합류점전)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갑천2	유등천 합류후 ~ 원촌교(하수처리장 유입전)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이하	25 이하	5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갑천3	원촌교 ~ 금강 합류점전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이하	100 이하	2 이상	0.3 이하	-	-
금 강	대청댐 직하 ~ 갑천 합류점전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주원천	전 구 간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정생천	전 구 간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이하	25 이하	5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유성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진잠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탄동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관평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대동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용호천	전 구 간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이하	25 이하	5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관계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 ② (생략)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8조(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4203호, 2012.11.27, 전부개정]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 량 (DO) (mg/L)	총인 (T-P) (mg/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다.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라.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마.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바.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아.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 7. (생략)